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0
----------	-------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의자 : 박광온 · 송옥주 · 송갑석

이춘석 · 김종민 · 권칠승

김영주 · 전현희 · 김현권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

법률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 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u>당해</u>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 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를 <u>당해</u>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해당</u>--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 ----- ----- ----- ----- ----- ----- --<u>해당</u>-- ----- -----.</p>